

8. 建築士法施行令改正

資料提供：建設部

• 건설부는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92. 9. 18.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하였다.

• 이번에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되는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간부문의 건축공사감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를 종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를 지도”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합성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적합성 검토,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합성 검토,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 확인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방수·단열·방음시공 등에 대한

지도, 건축설비의 기계·기구 및 배관에 관한 사항의 확인,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 등”으로 구체화하여 공사감리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으며,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등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현장감리를 “수시 또는 필요한 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애매한 감리시기와 방법을 “터파기공사, 기초·외벽·지붕스래브등 주요 구조부의 철근 배근 및 조적공사, 단열·방습·방수등 주요 취약부의 공사시”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원의 중요대상이 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도록 하였고,

- 공사감리방법에 있어 종래 “건축사보”가 공사현장에서 상주 또는 비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건축사 또는 건축사 책임하에 건축사보”가 현장감리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축사의 공사감리 책임을 제고시킴

-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됨에 따라 설계. 감리업무의 수요가 증대되고 건축 설계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단독건축 사무소의 업무범위를 현행 “10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하(공동주택의 경우 5층이하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15층이하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

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단독건축사 사무소와 종합건축사사무소간의 업무 범위의 균형을 꾀하고 수주경쟁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건축설계의 질적 향상을 기함.

- 이 개정안은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중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자연속의 신도시 꿈이있는 미래도시